

<오션아카데미 1기 골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오션아카데미1기골프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는 한국해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오션아카데미 1기 수료 동문모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골프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며,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이 회를 통하여 회원 서로간에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며, 골프를 사랑하고, 좋은 골프 매너를 갖춘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휴회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창립시 입회한 회원과 기존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정회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입회비와 연회비의 납입을 필한 자.)

2. 준회원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 준회원 자격을 갖는다.

3. 휴회회원

본 회의 정회원중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휴회를 신청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신청월로부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모임에 적극참여하고, 각종 회비를 납부하고, 회의 결정을 따르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정회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5조 (회원의 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정기모임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회원
2.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본 회의 목적과 회원간의 친목을 현저히 저해하는 회원

제3장 회의와 모임

제6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12월 정기모임시 개최한다.

2. 정기총회의 안건은 차기 임원진의 선출과 회칙 제정 및 개정을 주 안건으로 한다. 또한, 기타 이 회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의결할 수 있다.

단, 결산 및 감사보고, 차기 회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보고 및 승인은 차기 회기 12월의 정기모임시 임시총회에서 하기로 한다.

제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가능한 매월 골프 라운딩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세번째 목요일 / 용원 CC로 고정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수와 선임여부는 당해 회기 정기총회시 결정한다.

1. 회장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2. 총무

본회의 정기모임 장소설정과 경기운영을 관장하고, 회원들의 경기결과, 경기점수 및 핸디를 관리한다.

또한 회장을 보좌하여 전반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본회의 홍보와 회원의 경조사 및 모든 재정을 관장한다.

4. 감사

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에 관해 항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선출)

임원진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회장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2. 총무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과반수 찬성

3. 감사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제11조 (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2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첫년도 100,000원으로 한다.

2. 연회비: 300,000원

3. 단, 위 제3조 3항에서 정한 [휴회회원]의 경우 연회비 1/2인 10만원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정기라운딩의 게스트 모집시 회장단의 요청에 의해 연 2회에 한하여 정기라운딩에 참가할 수 있다.

4. 정기모임 골프라운딩에 참석의사를 밝힌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불참하는 경우 늦어도 정기라운딩 5일전까지 불참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5만원의 불참 위약금을 본회 재정으로 납입한다. (불참하는 회원은 불참으로 인해 타 회원에 끼친 금전적 손해와 게스트 초청시 발생하는 경비를 인정해야 한다.)

제13조 (회비의 사용)

정기모임후 점심식사비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재정으로 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부칙

1. 개정된 본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기라운딩시 경기결과에 따른 점수 산정 및 시상은 별첨한 [오션아카데미1기골프회 경기규칙 - 2009년도]에 따른다.

3.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